

의안번호	제 40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368 회)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
----------	----

제출연월일 : 2018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다수인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으로 화재안전기반 조성
-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개정하여 도민 신고의식 제고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가 목적
- 포상금 등 지급 대상(안 제3조)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추가
- 포상금 등의 지급(안 제7조)
 -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1회당 현금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다. 운수시설
 - 라.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복합건축물(나목이나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영업)

제3조제2항제2호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제2항 후단 중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를 “입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제4항 중 “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제3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목적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1. 제3조제2항제1호의 불법행위 가.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다음 소방시설을 차단, 고장 방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방치하는 행위				
	2. 제3조제2항제2호의 불법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3. 제3조제2항제3호의 불법행위 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및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는 2방향 이상에서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u>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u>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u>를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충청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

마. 위락시설

바. 복합건축물(나목이나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영업)

② 포상금 등을 -----

-----.

2.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

가. -----

나. -----

관련법령 발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 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포상금 지급회수 및 방법, 제한을 일부 개정하여 위반행위 지속 단속을 통한 비상구 개방 의식 정착

2. 비용 발생 요인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
 ※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 ~ 300만원 부과

3. 관련조문

- 안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비상구 신고포상금 운영현황

지급년도	편성예산(천원)	지급금액(천원)	지급건수(건)	비고
2012년	5,000	3,600	72	
2013년	5,000	1,200	24	
2014년	3,000	300	7	
2015년	3,000	0	0	
2016년	3,000	100	2	
2017년	3,000	0	0	

※ 동일인이 신고시 지급 제한에 따라 신고포상금 현황 감소

다. 추 계 결 과 : '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86,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 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출	86,000	6,000	20,000	20,000	20,000	20,000
신고 포상금	86,000	6,000	20,000	20,000	20,000	20,000

6. 작성자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익수